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05월 26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21년 06월 10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6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1년 06월 10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안전교통과장)

### 가. 제안이유

-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개년 법정계획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심의 확정하기 위한 위원회 임
-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안 제2조)
-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안 제3조)

○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안 제8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현진)

○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7조 기본계획을

5년 단위 수립을 위한 교통안전 위원회에 대한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1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회 심의·의결 사항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원회 구성과 회의 운영사항

안 제8조에서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요청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 상위법에 근거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부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회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경제건설국장, 안전교통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평창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평창군의회 의원
2. 평창경찰서交通安全업무 관련 부서장
3. 평창군교육지원청交通安全업무 관련 부서장
4. 평창소방서交通安全업무 관련 부서장
5.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交通安全업무 담당부서장 또는交通安全관리 담당자
6. 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交通安全업무 담당부서장 또는交通安全정책 담당자
- 7.交通安全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운수관련 종사자
8.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교통관련 단체,交通安全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9. 그 밖에交通安全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열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팀장 혹은 교통관리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나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